

교원 교비국외파견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4.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교비국외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원 교비 국외파견이란 우리 대학의 교육 및 학술 연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비의 지원으로 일정기간 외국의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국외파견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1. 우리 대학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자
2. 신청 일로부터 과거 8년 동안 연구목적으로 국내·외에 파견된 경력이 없는 자(단, 3개월 이하 단기연수는 제외)
3. 파견희망국에서 언어구사에 지장이 없는 자
4. 국외파견 수행에 건강상 지장이 없는 자
5. 신원상 국외파견에 지장이 없는 자

제4조(파견분야) 우리 대학에 설치된 학과의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국외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우선한다.

제5조(경비지원) 교비 국외파견 교원에 대한 지원경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책정한다.

1. 연구 및 체재경비
2. 왕복항공료

제6조(파견기간) 교비 국외파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7조(기간의 연장) ① 연구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연장허가신청서(연장사유와 기간명시) 1부
2.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② 총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③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으로 인한 연구 및 체재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자의 신분) ① 교비 국외파견자의 신분은 국비 국외파견에 준하며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당초의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은 휴직으로 한다.

제9조(파견자의 보수) ① 교비로 파견된 교원은 국비 국외파견에 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파견기간이 연장된 휴직기간의 보수는 학교법인 중앙학원 정관 제43조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파견의 개시와 종료) 국외파견은 학기개시 이전에 출국하여 학기시작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신청) 파견희망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장을 경우 총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4.3.1>

1. 파견대학 또는 연구기관장의 동의서 1부
2. 연구계획서 1부
3. 서약서 1부
4. 학과장·학부장의 동의서 1부

제12조(추천) 교학처장은 파견희망자의 자격요건 및 연구계획서를 1차 심사한 후 적격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3.1.>

제13조(파견자 선정) ① 총장은 연구계획 및 연구 기대효과를 검토한 후 “파견자 선정기준”에 따라 파견자를 최종 선정한다.

② “파견자 선정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연구 중간보고) 파견자는 파견기간의 ½이 경과하기 이전에 연구진행 실적·향후 연구계획 등 연구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과제의 변경) ① 연구과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파견 연구기관장이 동의하고 당초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연구계획변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연구계획 변경신청의 승인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③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는 파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불허한다.

제16조(귀국보고) 연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 귀국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결과 보고 및 논문발표) 파견자는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 1부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해당 논문을 교내논문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제18조(지급경비 회수) ① 총장은 파견자의 연구진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일시 귀국하는 등 파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파견을 취소함과 동시에 즉시 본인에게 귀국을 명하고 지급한 경비 전액을 회수한다.

② 일시귀국과 조기귀국을 합하여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대해서 연구비 및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회수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파견이 취소된 교원은 귀국 일로부터 파견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교내연구비 및 학술활동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④ 연구보고서 및 해당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교원은 제출기한 경과 후부터 해당 자료 제출 시까지 교내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파견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여도 연구보고서

및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파견시 지급한 경비를 전액 회수한다.

제19조(복무의무) ① 교비의 지원을 받아 국외연구활동을 수행한 교원은 귀국 후 파견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리 대학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배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파견기간 중 지급받은 연구비 및 체제비·항공료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사표제출) 파견교원은 귀국한 후가 아니면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관에 취업하거나 타국 정부의 전문가로 초빙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